

『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9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9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9월 20일

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국장 박 성 애

나. 제안이유

-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실화 함으로써 원활하고 내실있는 식당 운영으로 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경로식당 이용료 조정(별표 1) : 2,500원 → 2,800원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제37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표1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경 자

○ 본 『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2,500원에서 2,800원으로 300원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급식의 질을 높여 지역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< 경로식당 이용료 변동 추이 >

(단위:원)

연 도	이용료	지 원 금 액	
		경로(만65세 이상)	기초생활수급자 (전액 지원)
2008~2012	2,000	500	2,000
2013~2014	2,300	800	2,300
2015~2019	2,500	1,000	2,500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